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25일, 모경종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7. 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모경중 의원)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나아정 전문위원)

개정안은 현재 12월에 집중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분산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 및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로 정하고 있음.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제3호¹⁾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음.²⁾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12월에 집중되고 있음.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접수 건수는 총 9,471,213건으로 연평균 2,367,803건, 월평균 197,316건이 접수되었는데, 12월의 접수 건수는 평균 50만건으로 2021년~2024년 기간 동안의 전체 월평

1)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⑤ 시·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2) 참고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경찰서 방문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함. 2024년에 접수된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신청 350만건 중 45.5%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방문 접수되었고, 29.9%는 경찰서에 방문 접수되었으며, 24.6%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됨. 경찰서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된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관되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업무가 처리됨.

균 197,316건의 2배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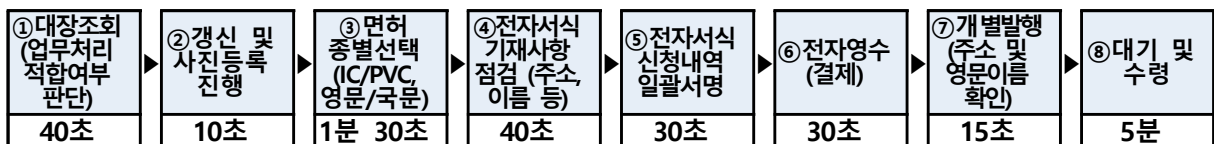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갱신업무 처리에는 약 9분(대기 및 수령 시간 5분 포함), 적성검사 업무에는 약 11분(대기 및 수령 시간 5분 포함)이 소요됨.³⁾

한국도로교통공단 민원창구에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4분으로 가정(대기 및 수령 시간 제외)하면, 근무자 1인당 1일 근무시간 8시간 동안 120건(15건×8시간)을 처리할 수 있음. 시험장 상시 근무인원은 일평균 약 230명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월간 565,800건(230명×120건×246일÷12월)의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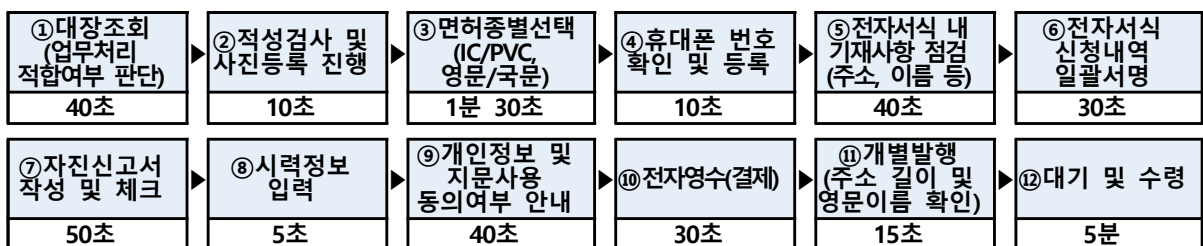
2022년 12월과 2024년 12월에 접수된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건수가 70만건과 60만건으로, 모든 인력이 근무시간 동안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월 처리량인 56만건을 넘어섰다는 점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외에도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분

3) 업무별 단계 및 소요시간(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증 갱신간: 약 9분(수령대기 시간 포함)



○ 적성검사의 업무단계 및 소요시간: 약 11분(수령대기시간 포함)



4)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평균 근무자수 약 230명은 최대 인원 269명 중 휴가, 육아단축근무자 등(27개 시험장 당 1.5명) 제외한 수치임.

실도난으로 인한 재발급 등⁵⁾도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업무가 12월에 집중되는 것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업무 처리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의 평균 대기시간은 2월에는 8분이지만, 12월에는 2시간 21분으로 조사되어,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이 12월에 집중되면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합격일과 갱신일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12월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87조제1항제2호는 갱신기간을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 전후 6개월로 개정하고 있는데, 향후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중 다수가 갱신 마감 기한인 갱신일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갱신 신청이 특정 월에 집중되는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보임.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갱신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갱신일의 안내 등을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보임.

경찰청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일본 등의 해외 사례에서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5)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운전면허 민원 처리 건수는 856만건으로 350만건의 운전면허증 갱신 민원 외에도 500만건의 민원을 처리함.

갱신 신청 일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갱신일이 아닌 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갱신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현행법에 따른 갱신기간은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은 갱신 기간(12개월)은 유지하되 대상자마다 갱신 기간의 기준점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갱신 수요가 연말 등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일본·캐나다 등 국외 사례와 운전자의 갱신 일자 예측을 더 용이하게 하는 방향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속하는 갱신대상자의 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갱신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을 현행 운전면허 합격일·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합격일·갱신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갱신기간의 기산점을 갱신일에서 생일로 변경하고,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증 갱신 시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과 개정 법률 시행 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경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변경

개정안의 부칙 제1조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변경에 대한 홍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의 성격상 시행일을 1월 1일로 하는 것이 국민의 인식 차원 및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는 수정 의견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2026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의 의미 명확화

개정안은 기존 운전면허증에 적시되어 있는 갱신기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뿐만 아니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다만,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개정규정에 따른 갱신기간 외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이 적용되어 여러 차례 갱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 갱신기간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모두 적용된다.</u>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이 법 시행 전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부 칙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u>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이 법 시행 전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 [붙임]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기산점을 갱신일로 유지하면서, 갱신기간을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기존 갱신일이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시 6월에 갱신 신청이 집중되어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해외 사례 중 운전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기간을 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갱신신청의 기준일을 생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변경된 갱신기간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변경이 시작되는 연도의 갱신기간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인 1년보다 짧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갱신기간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존 법률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개정함(안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

나.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안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이 법 시행 전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부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함(부칙 제2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날을 기준으로”를 각각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갱신에 관한 적용례”를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부칙 같은 조 중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이”로,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모두 적용된다”로 하며, 부칙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이 법 시행 전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 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 검사) ① ----- ----- ----- ----- ----- ----- ----- ----- ----- ----- -----.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 검사) ① ----- ----- ----- ----- ----- ----- ----- ----- ----- ----- -----.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1. ----- ----- ----- ----- ----- ----- ----- ----- ----- ----- -----	1. ----- ----- ----- ----- ----- ----- ----- ----- ----- ----- -----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 람은 3년)이 되는 <u>날이 속하는 해의</u> <u>1월 1일부터 12월</u> <u>31일까지</u>	----- ----- ----- ----- ----- ----- <u>날을 기준으로</u> <u>전후 각각 6개월</u> <u>이내</u>	----- ----- ----- ----- ----- ----- <u>날이 속하는 해</u> <u>의 생일 전후 각</u> <u>각 6개월 이내</u>
2. 제1호 외의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 은 직전의 운전면 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 (직전의 운전면허 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 년, 한쪽 눈만 보 지 못하는 사람으 로서 제1종 운전 면허 중 보통면허 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u>날이</u> <u>속하는 해의 1월</u>	2. ----- ----- ----- ----- ----- ----- ----- ----- ----- ----- ----- ----- ----- ----- ----- ----- <u>날을</u> <u>기준으로 전후</u>	2. ----- ----- ----- ----- ----- ----- ----- ----- ----- ----- ----- ----- ----- ----- ----- ----- <u>날이</u> <u>속하는 해의 생</u>

<u>1일부터 12월 31일까지</u> ② ~ ④ (생략)	<u>각각 6개월 이내</u>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u>제2조(운전면허증 갱신에 관한 적용례)</u> <u>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u><신설></u> <u><신설></u>	<u>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u>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모두 적용된다.</u> <u>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u> <u>2. 이 법 시행 전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u>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이 법 시행 전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 ----- ----- ----- -----.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u>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u>	1. ----- ----- ----- ----- ----- ----- ----- ----- ----- ----- ----- <u>생일 전후</u> <u>각각 6개월 이내</u>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	2. ----- -----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증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의 <u>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u> ② ~ ④ (생략)	----- ----- ----- ----- ----- ----- ---<u>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 내</u> ② ~ ④ (현행과 같음)
--	--